

電氣供給規程 改正에 關하여

Amendment of Rules and Regulations for Electric Power Service

金 閔 熙

韓電 營業部 營業計劃課長

1. 머리말

電氣供給規程이란 一般 電氣事業者(韓國電力公社)가 一般 需用에 대하여 電氣를 供給할 時의 電氣料金 기타의 供給條件을 定한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需用家와 韓國電力公社間의 電氣供給에 關한 權利義務關係를 규정한 것이다.

電氣의 供給은 사용형태가 다양하고, 대다수 많은 需用家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개개의 需用家와 契約內容을 그때마다 協議하여 결정하기 곤란하며, 또한 電力事業은 그 特性上 地域 獨占이 인정되고 있는 반면 供給義務가 賦課되어 있으며 모든 需用家を 公平하게 취급하여야 하므로 電氣事業者는 電氣料金 기타의 供給條件을 定型化한 供給規程을 미리 정해둘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觀點에서 電氣事業法(第14條, 第15條)에서도 一般 電氣事業者에게 電氣供給 義務를 賦與함과 同時에 電氣供給規程을 定하여 動力資源部 長官의 認可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韓國電力公社에서는 1982年 1月 1日 公社 發足과 더불어 需用家에게 보다 높은 水準의 서어비스를 提供하기 위하여 電氣供給規程을 全面 改正, 動力資源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1983年 9월 1일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이번 電氣供給規程의 改正 方向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 ① 一般 需用家の 理解가 용이하도록 體制, 文脈, 用語 整備
- ② 각종 民願業務를 需用家 便宜爲主로 전환
- ③ 不條理要因을 제거하고 節次 간소화를 통하여 能

를 향상

한편 이번 改正은 부분 改正이 아닌 全面 改正으로 서 1961年 7월 1日 三社統合以後 처음 있는 일로 1982年 1월 한국전력에 電氣供給規程 改正 1차 答復을 구성,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2차에 걸친 자체 功委會와 大韓 電氣協會가 주관한 需用家, 學界, 獎界등 관계 전문가 의 심의를 거치는 등 國民의 輿論을 폭넓게 反映토록 노력하였다.

2. 추진경위

○改正資料蒐集

82年 1월 1일부터 2개월간 本社에서 자체 資料를 검토, 문제점을 파악하는 동시에 전담반 員들이 一線事業所를 순회하며 資料를 수집하였으며, 전기협회, 전기공사협회, 전기안전공사, 대한주택공사, 검침운영회사 등 대외기관에 요청하여 개정자료 18점을 수집하였다.

※ 改正資料 蒐集現況

자 료 수 집 처		전 수
社 內	본 사	26
	사업소(지사, 지점)	542
	소 계	568
대 외 기 간	전기협회	10
	대한주택공사	7
	새서울 종합용역	1
	소 계	18
합 계		586

○改善方案 檢討

수집된 자료를 類型別로 분류하여 문제점에 대한 改善方案을 檢討하고 外國制度和 비교한 후 실천가능성을 감안하여 수개의 試案을 작성 하였다.

○ 1 차 공청회 개최

本公司에서 작성한 改善方案을 全部(室) 및 事業所에 檢討 依頼後 實務經驗이 많은 간부들을 중심으로 서울(82. 5. 21)과 대전(82. 5. 26)에서 2 차례에 걸쳐 1 차 공청회를 열어 개선방안에 대하여 충분히 討議, 試案을 縮小 조정하였다.

○ 2 차 공청회 개최

82. 10. 15~10. 16 본사 및 사업소 課·係長級 51명 이 참석한 가운데 1 차 공청회에서 討議, 分析調整한 改善方案을 逐條審議 형식으로 논의하였다.

○韓電案 確定

1, 2 차 공청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分析, 改善方案을 修正補完하고 電氣供給規程의 體制를 재편성하는 한편 용어·문맥등을 정비하여 韓國電力公社 案을 確定 82. 12. 17 動力資源部에 認可 申請하였다.

○動力資源部 審議 및 改正認可

動力資源部는 韓電의 認可申請案을 전기협회, 전기공사협회, 전기안전공사등에 검토의뢰하여 의견을 제시토록 하였으며 관계기관에서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한전의 의견을 접수한 후 2차에 걸쳐 종합적인 심의를 하여 83. 8. 16 전기공급규정 개정안을 인가, 83. 9. 1 부터 시행토록 하였다.

3. 改正 主要內容

가. 改正條文 類型別 分類

區 分		條 文 數	
條 文 數	從 前	103條	
	統 廢 合	13條	
	新 設	9條	
	改 正	99條	
改正內容	用 語·文 脈 整 備	96條	
	內容變更	制 度 改 善	40條
		韓 電 內 規 的 規 程 化	23條

나. 制度改善

(1) 一般業務 改善

○電話 또는 口頭 民願處理 根據마련 (第7條, 第11條)

民願事項 처리에 있어 전화 또는 구두로 신청이 가능한 범위를 종전에는 指針으로만 住宅用需用의 명의 변경 등 그 처리범위를 정하여 운영해 왔으나, 앞으로는 요금미납에 따라 계약이 폐지된 需用家의 電氣再使用 申請, 契約最大電力 3kW이하 수용의 契約種別 變更 申請, 契約最大電力 3kW이하 農事用電力 需用의 休止 復活 申請 등도 電氣供給規程에 의하여 電話 또는 口頭로 申請 處理할 수 있도록 그 가능범위를 확대하였다.

○使用者 名義의 需用申請 制度改善(第7條)

需用場所의 所有者와 電氣使用者가 서로 다른 경우 종전에는 양자가 연대보증하여 공동명의로 신청하거나, 소유자가 보증하여 사용자 단독명의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소유자가 전기요금 지불에 대한 보증을 하지 않아도 사용자가 보증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사용자 단독명의로 수용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需給契約 廢止後의 債權 債務關係 明示(第14條)

전기요금 기타의 채권채무가 소멸되지 아니한 需用場所에서 신 수용자가 전기를 다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채권채무가 신수용가에게 승계된다는 내용을 몰라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명의변경 조문과는 별도로 수급 계약체제후의 채권채무 승계내용을 규정에 명시하였다.

다만 민사소송법에 의한 법원의 강제 경매 절차에 의하여 경락받은 경우와 위약금 및 배상금은 자동승계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最大需要電力計 附設需用의 契約電力決定方法 一部 變更(第19條)

最大需要電力計 附設需用家가 契約最大電力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변경전과 변경후의 契約電力을 각각 산정한 후 日數計算한다는 현행 指針의 내용을 規程에 明示하였으며 最大需要電力計의 故障 또는 檢定有效期間 滿了등으로 臨時 撤去後 再附設에 필요한 기간을 최소한 2개월 정도 수용가에게 주기 위하여 철거전 最大需要電力에 의하여 契約電力을 적용하는 기간을 종전 2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하였고, 故障撤去와 檢定有效期間 滿了撤去時의 契約電力決定方法을 구분하여 적용토록 하였다.

— 故障撤去時：撤去指針 不認定

— 期間滿了撤去時：撤去指針 認定

(예시)

最大需要電力計를 附設한 契約最大電力 560kW (下限値430kW)인 수용가의 경우

區分	故障撤去		期間滿了撤去		備考
	最大需要電力	契約電力	最大需要電力	契約電力	
83. 1	500	500	500	470	*臨時撤去月 포함 3개월 경과후 대부분이므로83년 8월분은 新規附設로 간주, 附設前과 附設後의 契約電力을 각각 算定하여 日數計算.
2	450		450		
3	400	↓	400	470	
(撤去) 4	470	500	470	470	
5	(?)	500	(?)	470	
6	(?)	500	(?)	470	
7	(?)	560	(?)	560	
(再設) 8	440	附設前 560 附設後 440	410	附設前 560 附設後 430	

○供給單位 分割범위 확대 (第22條)

상점 또는 상가건물에 있어 所有權은 同一하나 使用者가 다른 경우에 使用者別로 供給單位를 分割 (轉電計量器 따로 附設) 하려면 共同設備가 없어야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현관, 복도, 계단등의 照明用電燈 및 소형기기와 揚排水施設 (소방용 급수시설등)은 共同設備對象에서 제외토록 規定에 明示함으로써 供給單位 分割 許容범위를 확대하였다.

○力率의 適用方法 改善 (第38條)

需要形態別로 力率 測定方法을 一元化하고 實測力率 適用對象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力率測定 및 計算方法을 區分 適用토록 하였다.

一. 高壓이상 需用: 平均力率 適用

다만 電力量計 또는 무효전력량계중 어느 하나가 고장이 있을 때에는 故障直前 3개월간 (電氣計器附設 期間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期間)의 월평균역률의 평균치를 고정월분의 역률로 하며, 이 기간이 최초 고정월분을 포함하여 3개월을 경과할 경우에는 첫째월분부터 重負荷時에 역률계에 의하여 측정된 역률에 의하여 실적역률이 고정직전 3개월간의 월평균역률의 평균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동 평균치를 적용한다.

一. 低壓需用: 綜合力率 適用

○電氣供給 停止 (斷電)의 事前豫告制 (第40條)

중전에는 需用家가 契約內容을 違反하였을 때에는 즉시 電氣의 供給을 停止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供給停止에 따르는 수용가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供給停止를 즉시 시행하는 경우와 수용가에게 供給停止 事由解消를 요청한 후 일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할 때 供給停止하는 경우로 二元化하였다.

○供給同意書 作成 需用家の 電氣料金 適用 制度 改善 (第55條)

供給同意書 또는 需給契約書를 作成하는 需用으로서 轉電과 約束한 需給開始 豫定日에 需用家の 사정으로

전기를 使用하지 아니할 때에는 需給開始豫定日부터 基本料金の 50%를 適用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供給同意書 作成 需用에 대하여는 ① 소규모 수용가 보호 ② 이미 준공된 供給設備에 대한 他需用의 活用 ③ 供給同意書는 需給契約書와 같이 쌍방이 확인 날인한 契約이 아니므로 需給開始日에 대한 수용가의 이해 곤란등을 고려하여 基本料金の 50%를 適用하는 제도를 폐지하였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수용가는 실제로 전기공급이 개시되는 날부터 전기요금을 적용하게 된다. 다만 契約最大電力 500kW이상 需用등 需給契約書 作成 需用은 종전과 같이 基本料金の 50%를 적용하게 되나 이경우에도 供給준비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需給契約豫定日의 연기 신청이 있을 때에는 期間에 관계없이 (중전에는 6개월)수용가의 희망에 따라 需給開始豫定日을 延期하여 주도록 하였다.

○臨時需用의 豫納金 現金豫置制度 改善 (第68條)

수용가가 일정기간 동안 전기를 임시로 사용코자 할 때에는 月間豫想 電氣料金の 3개월분을 現金으로만 예치토록 되어 있었으나, 수용가의 資金負擔을 덜어주기 위하여 앞으로는 보험회사의 보증보험증권, 금융기관의 支給保證書 또는 연대보증서를 제출할 때에는 現金豫置를 면제하도록 하였다.

○ 契約最大電力 3kW以下 需用家の 契約種別 變更時 料金適用 方法改善 (第71條)

住宅用 이외의 契約最大電力 3kW이하 기타 수용은 수용가의 희망에 따라 住宅用電力 또는 業務用 電力을 적용하도록 되어있는 바 이에 따라 수용가로부터 契約種別 變更申請이 있을 때에는 變更日을 基準하여 變更前과 變更後의 料金を 각각 日數計算하였으나, 앞으로는 需用家에게 料金を 有利하게 적용함과 동시에 현장 확인 및 料金計算등 업무처리의 簡素化를 도모 할 수 있도록 變更日이 속하는 月分의 전기요금부터 변경된 契約種別 料金を 적용하도록 하였다.

(2) 工事費 制度 改善

○增設과 同時 供給方式變更 需用家 工事費 負擔方法 改善 (第84條)

單相需用家가 新設後 1년 이내에 增設과 동시에 三相으로 供給方式을 변경할 경우에는 新設로 간주하여 工事費를 適用하였으나 앞으로는 供給設備 變更後 (三相)와 供給設備 變更前(單相)의 標準工事費 差額만 需用家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예시)

單相 10kW需用이 三相 20kW로 增設과 同時 供給方式을 변경할 때의 수용가 부담 공사비 산정.

- 증전 : 832,400원 (삼상20kW 신설 공사비)
- 개정 : 639,220원 (삼상 20kW 신설공사비 - 단상10kW신설공사비)

○ 供給單位 分割 및 合併需用의 工事費 標準化 (第84條)

증전에는 供給單位를 分割 또는 合併할 경우 實設計 工事費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設計結果에 따라 需用家 負擔金이 달라지고, 또한 공사비 면탈의 소지가 있어 수용기간 공사비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供給單位 分割 또는 合併의 경우에도 供給設備 變更後와 供給設備 變更前의 標準工事費 差額을 수용가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다만 住宅用需用으로서 新設後 1년 경과후에 供給單位를 分割하는 경우에는 需用家の 負擔을 경감 시켜주기 위해 設計工事費를 適用하도록 하였다.

(예시)

單相 3kW 1戶 新設後 單相 1kW씩 3戶로 供給單位를 分割하는 경우의 工事費 算定.

- 供給單位 分割前 標準工事費 : 45,970원 (單相 3kW 1戶 新設時 工事費)
- 供給單位 分割後 標準工事費 : 137,910원 (單相 1kW 3戶 新設時 工事費)
- 需用家負擔金 : 91,940원 (137,910원 - 45,970원)

○ 料金未納으로 廢止된 後 電氣 再使用 申請時 工事費 負擔 方法改善 (第84條)

증전에는 폐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 再使用 申請時에는 廢止期間中에도 基本料金を 적용하였으며 폐지일로부터 2개월 경과후 申請時에는 標準工事費와 實設計 工事費중 적은 것을 需用家が 負擔하도록 하였으나, 工事費負擔制度를 標準化하고 需用家の 負擔을 덜어주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改正하였다.

- 廢止日로부터 2개월 이내 再使用 申請時 : 工事費 면제 (基本料金도 면제)
- 廢止日로부터 2개월 경과후 1년 이내 再使用 申請時 : 標準工事費 또는 新設工事費의 50%만 需用家 負擔
- 廢止日로부터 1년 경과후 再使用 申請時 : 一般 新設需用과 같이 標準工事費 또는 設計工事費 需用家 負擔

○ 건물 撤去後 再新築需用 工事費 負擔方法 改善(第84條)

廢止後 3개월 이내 申請時에는 設計工事費를 適用하고 3개월 경과후 申請時에는 一般新設需用과 같이 工事費를 適用 托록 되어 있었으나 需用家 負擔輕減 및

公平取扱을 위하여 料金未納 需用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하도록 하였다.

○ 專用供給設備 工事費 負擔(第86條)

專用供給設備 施設 事由에 따라 工事費 負擔이 相異하고, 變電所 引出開閉裝置의 有無에 따라 需用家 負擔金이 相異한 증전 制度의 문제점을 시정하고, 需用家の 負擔을 덜어주기 위하여 變電所의 引出開閉裝置를 需用家が 專用하는 경우에는 變電所 引出開閉裝置 新設 또는 已설치된 인출개폐장치 이용에 관계없이 차단기 가액만 需用家が 負擔토록 하였다.

따라서 차단기 가액 이외의 자재비와 설치노무비 등 諸費用은 韓電에서 부담하게 되었다.

○ 標準工事費의 自動調整(第90條)

標準工事費는 매년 도매물가지數의 變動率에 따라 自動的으로 調整되되 변동율이 $\pm 10\%$ 미만일 경우에는 조정하지 않도록 되어 있었으나, 증전제도가 低物價政策에 부합되지 않고 調整時에는 대폭 引上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自動調整率을 $\pm 5\%$ 로 변경하였다.

○ 용접기등 單相 需用家の 三相 工事費 適用 制度 廢止 (第91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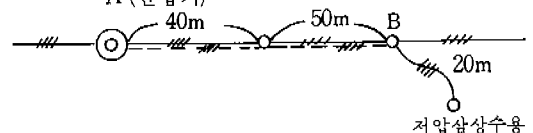
용접기등 單相需用의 경우에도 韓電에서 變壓器를 단독으로 설치하였을 때에는 三相工事費를 適用토록 되어 있었으나, 單相需用家は 變압기 단독사용 또는 공동사용에 관계없이 單相工事費를 適用토록 하여 需用家負擔 輕減은 물론 工事費 計算方法을 單純化하였다.

○ 工事費負擔金 算定距離 測定 및 適用方法 單純化 (第93條)

工事費 負擔金 算定距離의 測定起點이 증전에는 需用場所에서 供給電壓과 同位電壓인 가장 가까운 電柱 또는 供給電壓으로 配장하기 위한 變압기의 1次側 電壓의 電柱로 되어 있어 設計結果에 따라 측정 기점이 변경되고, 이에 따라 需用家負擔金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어, 앞으로는 供給電壓에 관계없이 低壓單相需用의 경우에는 韓電의 配電線로중 가장 가까운 20kV급 이하의 電柱를, 低壓三相需用의 경우에는 三相電源이 있는 가장 가까운 20kV급 이하의 電柱를 測定起點으로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高壓需用의 경우에는 증전과 같이 供給電壓과 同位電壓인 가장 가까운 電柱를 測定起點으로 하였다.

(예시) A (變압기)



(중전)

A전주에서 B전주까지 저압선로 첩가후 공급시 : $(40\text{m}+50\text{m}) \times 7920\text{원} = 712,800$ (거리공사비)

B전주에서 변압기 설치후 공급시 : 기본거리 (30m) 이 내이므로 거리공사비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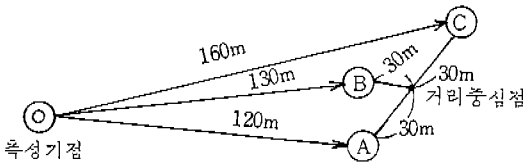
(개정)

설계내용에 관계없이 B전주가 측정지점이므로 거리공사비 없음

○集團需用의 負擔金 算定距離 測定 및 適用方法 單純化 (第93條)

設計1件當 2戶 이상인 集團需用의 경우에는 基本距離와 添加距離를 각각 計算한 後 합산토록 되어 있어, 계산방법이 복잡하고 需用家負擔金이 1戶씩 順次的으로 申請하는 경우보다 현저히 증가하게 되어, 앞으로는 集團需用의 경우 負擔金 算定距離는 測定起點에서 가장 가까운 것으로 간주하여 測定토록 하였다.

(예시)



(중전)

- 공사비부담금 산정거리 : 200 m (기본거리 140m, 첩가거리 60m)

- 수용가부담금 : 710,590원

(개정)

- 공사비부담금 산정거리 : A는120m, B, C는 각각 100m 이내

- 수용가부담금 : 235,110원 (A : 143,170원, B : 45,970원, C : 45,970원)

註) B, C수용의 측정기점은 A수용을 공급하기 위하여 시설하는 전주임)

○地中電線路로 供給하는 需用의 工事費 負擔方法 改善 (第95條, 第96條)

需用家間의 工事費 公平負擔 유도 및 業務 簡素化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工事費 負擔方法을 變更하였다.

- 低壓需用

중전에는 변압기가액만 조정토록 되어 있었으나, 配電函에 대하여도 변압기와 같은 방법으로 工事費를 容積比例로 調整토록 하였다.

※ 계상액 = 공급변압기 또는 배전함 가액

$$\times \frac{\text{신·중설 계약 최대 전력}}{\text{공급변압기 또는 배전함 용량}}$$

- 高壓 및 特別高壓 需用

중전에는 適正電線을 決定한 後 同 電線을 基準으로 再設計하여 工事費를 算定토록 되어 있었으나, 適正電線에 의하여 再設計를 하지 아니하고 電線價額은 架空線路와 같은 方法으로 調整함과 同時 管路 또는 通道部分의 工事費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調整하여 負擔토록 하였다.

※ 계상액 = 관로 또는 통도부분의 공사비

$$\times \frac{\text{사용공수 또는 사용회선수}}{\text{시설공수 또는 시설회선수}}$$

(3) 體制, 用語, 文脈整備

중전 體制는 內容에 적합하도록 改編하였고, 어려운 用語와 行政用語로서 融通對象 用語는 需用家가 理解하기 쉬운 用語로 바꾸었으며 規程解析의 錯誤 또는 需用家의 誤解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은 명확하게 文脈을 整備하였다.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體制整備

從 前	改 正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篇) 제 1 편 電氣의 供給 및 使用 제 2 편 電氣料金 제 3 편 工事費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章) 제 1 장 總則 제 2 장 電氣의 供給 및 使用 제 3 장 電氣料金 제 4 장 工事費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學) 14개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 (節) 10개 절 (유사내용 동폐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 (條) 103개 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 (條) 99개 조 - 유사 내용 동폐합 13개 조 - 중요 내용 소문신설 9개 조

4. 맺는말

電氣供給規程은 電氣를 使用하는 모든 國民에게 適用되는 것이므로 이번 改正作業에서는 그간의 社會·經濟的 變化에 能動的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國民의 輿論을 폭넓게 反映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앞으로도 점증하는 需用家의 要求를 만족시키고 모든 需用家를 公平하게 대우한다는 命題下에 끊임없는 研究改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